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휴의 관리특성에서 체계적 관리는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제휴의 개시단계에서 자세한 계약을 통하여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파트너간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두 기업 이상이 결합된 공동운영상의 과업설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컨테이너 정기선간 전략적 제휴의 성과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전략적 중요성, 경영자의 의지, 몰입, 신뢰, 상호의존성, 의사소통의 질, 정보의 공유, 체계적 관리가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기업의 제휴담당자들은 파트너기업과의 신뢰(Trust)를 바탕으로 더욱더 몰입(Commitment)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를 통하여 파트너기업과의 의사소통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파트너의 선택 시에는 제휴체결이후 신뢰, 몰입을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4. 서해상 남북한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최진모
지도교수 김영구

1999년 연평해전, 2001년의 북한상선 영해침범사건, 2002년 서해교전발발 등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북방한계선으로 상징되는 서해 5개도서 인근해역의 법적 성격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서해 5개도서 인근해역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결국 서해상에서의 남북한간 해상경계선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곧 1953년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해상경계선 규정이 불명확한데 있다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남북간의 경계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일한 쌍방 합의인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채 조문과 협상당시의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해석에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그 주요 내용으로써 남과 북 상호간의 불가침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한다'라는 유보의 규정만을 남긴 것은 남북간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남북간 무력충돌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완전한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명확한 해상경계선 규정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해상경계선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례 또는 근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간의 상호합의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 확정시 해양법 원칙의 적용'이라는 가정하에, 한반도에서의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1953년 정전협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북방한계선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협정체결당시 UN군측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지위, 정전협정상에 반영된 경계획정의 원칙과 경계선조항, 협상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의 경계선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정전협정상의 경계선조항의 검토결과와 북방한계선을 비교 검토하였다. 한반도 정전협정은 그 형식과 명칭이 정전협정이면서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보충됨으로써 사실상 평화조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전협정 체결 당시 UN군측의 진정한 교전당사자이며 협정당사자로서 한국의 지위는 확고한 것이다. 정전협정에 반영된 경계획정원칙으로서의 'Status quo ante bellum', 'Uti possidetis'(해공보상론), '현 접촉선(the line of contact)의 고착'과 같은 원칙들과 정전협정상의 경계선조항을 검토하여 볼 때, 정전협정상의 해상경계선은 북방한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3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동 합의서가 남북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생각건대 남북기본합의서는 '비기속적 합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에서 누락된 불가침의 합의를 포함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해양법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들과 그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남북간 해상경계선 확정시 적용할 만한 원칙과 선례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해상경계선의 확정을 위해 남북간의 합의를 전제로 할 때 적용될 경계획정의 원칙과 고려되어야 할 관련사정을 검토하였는바 남북간 해상경계선 설정시 적용될 원칙은 합의의 원칙, 중간선·등거리선 원칙, 형평의 원칙이며 특히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북방한계선 등은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관련된 특수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원칙들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할 때, 남북한간 해상경계선의 구체적 방안은 대부분 기존의 북방한계선과 일치하고 있으나 용도 남부수역에서는 지금의 북방한계선보다 10해리(해상마일)정도 남쪽으로 하향된 것이다. 이는 소청도-옹도-연평도간의 각 기점으로부터 등거리 지점에 있는 각 점을 연결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